

『민족무용』 논문 심사 규정

제1조

『민족무용』의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
제2조

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학계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3조

논문 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비공개 심사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

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게재: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
2. 수정 후 게재: 논문내용과 연구결과는 가치가 있으나 논문형식과 구성 등에 미미한 수정사항이 있는 논문
3. 수정 후 재심: 논문의 내용과 구성이 상당부분 미흡하여 많은 수정을 요하는 논문(심사위원이 제시한 사항을 지정한 기일에 수정 완료하였을 경우 재심을 통해 당호 혹은 다음호에 게재될 수 있다.)
4. 반려: 논문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결과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

심사위원 3인의 종합 판정

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해 60점 이상 게재, 45점 이상 수정 후 게재, 45점 미만은 반려로 판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